<논문>

아리스토텔레스의 互惠性(ἀντιπεπονθὸς)에 대하여

박준석*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호혜성은 정의인가?
1. 호혜성은 정의의 한 형태라는 견해
2. 호혜성은 하나의 경제 법칙이라는 견해
3. 소결
Ⅲ. 호혜성은 어떤 정의인가?
1. 호혜성은 분배적 정의의 일종이라는 견해
2. 호혜성은 시정적 정의의 일종이라는 견해
3. 소결
Ⅳ. 호혜성의 의미
1. 호혜성은 비자발적 거래에도 관계하는가?
2. 호혜성의 비례적 성질: "공직자 폭행 사례"를 중심으로
Ⅴ. 나가며

[국문 요약]

이 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互惠性 개념이 단지 하나의 경제 법칙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正義의 한 형태임을 보이고자 한다. 특히 그것은 Polis의 존립근거가 되는 근본적 규범 원리로서의 제3의 正義 유형 혹은 特殊的 正義의 제3의 유형을 구성하고 있다기보다는, 아리스토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bookofchange@daum.net)

텔레스의 두 가지 特殊的 正義의 틀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分配的 正義보다는 是正的 正義의 특별한 한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하는 바이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互惠性 개념이 "算術的" 平等을 지향하는 是正的 正義의 한 형태라는 점은 互惠性 개념의 "比例的" 특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적 부정합성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나아가 互惠性 개념이 是正的 正義의 "특별한" 한 형태라는 점은, 가령 自發的 去來로부터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디카스테스가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데 지침이 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는 "보통의" 是正的 正義인 것이 아니라, 自發的 去來의 수행 기준 그 자체 즉, 去來 당사자들이 去來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장적 메커니즘'에 따라 比例的인 방식으로 去來의 조건을 결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지침이 되는 독특한 기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글은 또한 互惠性 개념이 自發的 去來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非自發的 去來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누군가 타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그 타인은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非自發的 去來에 있어서는, 일견 가해자가 범죄를 수행하는 데 지침이 되는 기준 따위가 있을 리도 없고,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침해를 당하는 데 지침이 되는 기준 따위도 있을 리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복수하려는 상황이거나, 정당방위를 시도하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적어도 피해자는 "比例에 따라" 되갚아야 하며, "比例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어를 시도해야 한다는 去來 수행 지침의 규율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각각의 去來에서 互惠性의 "比例的" 특성은 교환하고자 하는 서비스 간의 比例的 가치 대응(自發的 去來)이나, 침해와 복수 내지 방어 간의 比例的 가치 대응(非自發的 去來)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주제어]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正義, 互惠性, 分配的 正義, 是正的 正義, 自發的 去來, 非自發的 去來

Ⅰ. 들어가며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Nicomachean Ethics*)>[1] 제5권에서 그의

1) 이하 <윤리학> 또는 *N.E.*로 줄여 쓰기로 한다. <윤리학>의 영문 번역으로는 주로 W.D. Ross, *Ethica Nicomachea in The Works of Aristotle Translated into English* Vol. 9(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25)과 H. Rackham, *The Nicomachean Ethics : with an English Translation*(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34)을 참조했으며, Sarah Broadie & Christopher Rowe, *Aristotle : Nicomachean Ethics*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02)도 긴요하게 참조했다. 또한 국문 번역으로는 최명관, 『니코마코스 윤리학』(서광사, 1986)을 참조했다. 그러나 이하에서 인용하고 있는 <윤리학>의

유명한 正義論을 기술하고 있다. 그는 먼저 이른바 一般的 正義(universal justice) 내지 "덕 전체"로서의 正義[2]와 特殊的 正義(particular justice) 내지 "덕의 일부"로서의 正義[3]를 구별하고, 후자를 다시 分配的 正義(διανεμητικὸν δίκαιον, distributive justice)[4]와 是正的 正義(διορθωτικόν δίκαιον, rectificatory or corrective justice)[5]로 나누어 차례로 설명하고 있다. 흔히 아리스토텔레스의 正義論이라 하면 바로 特殊的 正義의 두 형태에 대한 그의 이론을 가리킨다.

是正的 正義에 관한 설명에 뒤이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른바 互惠性(ἀντιπεπονθὸς, reciprocity)[6]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그런데 바로 이 互惠性에 대한 언급 부분이 그의 正義論 체계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설이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시도했었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점들이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기 때문이다.[7]

개소들은 이상의 네 번역문을 기초로 하되, 필자의 수정이 다소 가미된 것임을 밝혀 둔다. 주로 참조한 두 편의 영문 번역은 모두 인터넷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가령 W.D. Ross의 번역은 The Internet Classics Archive(http://classics.mit.edu/index.html)에서, 그리고 H. Rackham의 번역(및 J. Bywater판 희랍어 원문)은 Perseus Digital Library(http://www.perseus.tufts.edu/hopp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N.E.*, 1129a1~1130a14.

3) *N.E.*, 1130a15~1131a9.

4) *N.E.*, 1131a10~1131b24.

5) *N.E.*, 1131b25~1132b20.

6) *N.E.*, 1132b21~1134a15.

7) 대표적인 학자들의 견해들은 다음의 몇 가지 문헌들에 잘 정리되어 있다. 정태욱, 「Aristoteles의 正義論에 관한 고찰」(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9), 36-57면 및 97-111면; 손병석, 「아리스토텔레스의 正義觀－報怨·報恩正義(to antipeponthos dikaion)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제15권(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1991), 281-2면 및 298-301면; Gabriel Danzig, "The Political Character of Aristotelian Reciprocity", *Classical Philosophy* 95-4(2000), pp.399-404. 따라서 이 글을 통해 다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또한 이 글 Ⅱ와 Ⅲ에서 그것들에 대한 간단한 분류 정도는 제시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분류의 방식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정태욱은 互惠性만이 아니라 特殊的 正義, 그 중에서도 특히 是正的 正義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포함해서 학설들의 입장을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포괄적이고 상세한 분류를 제공하고 있다. 분명 互惠性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是正的 正義에 대한 이해의 차이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태욱의 접근 방식은 타당하다. 하지만, 互惠性에 관한 논의에 보다 집중하고 特殊的 正義 일반에 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언급한다는 이 글의 논의 범위에 비추어 보면 서술 전략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반면 손병석은 互惠性에 관한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를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그것이 기존의 견해들과 구체적으로 어떤

이러한 사정은 일차적으로 互惠性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언급이 개시되는 정황과 관련이 있다. 互惠性은 먼저 피타고라스학파에 의해 하나의 正義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한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으므로[8] 일견 互惠性을 正義의 범주로 구성하지는 않을 것 같으면서도, "공동체에서 이러한 종류의 正義는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한다."[9]고 말함으로써 이른바 '互惠的 正義'라고 하는 개념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10] 물론 피타고라스학파의 互惠性(Pythagorean reciprocity) 개념은 算術的(arithmetical) 互惠性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지하고 있는 互惠性(Aristotelian reciprocity) 개념은 比例的(analogous) 互惠性이라는 점에서[11] 그가 전자를 正義의 범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후자를 正義의 범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모순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피타고라스학파의 互惠性 개념을 거부하면서 동원한 논리는 그것이 "分配的 正義와 是正的 正義 그 어느 것에도 들어맞지 않는다."[12]는 것이었음을 고려

지점에서 다른 것인지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매우 효율적인 서술 전략임에 틀림없지만, 분류 체계에 따른 서술이 아니어서 특히 기존 견해들 상호간의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상대적으로 G. Danzig의 서술 전략은 효율성과 체계성을 어느 정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방식에 따르면 먼저 互惠性이 "正義"인지를 묻고, 互惠性이 "正義"라면 두 가지 特殊的 正義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3의 正義 유형인지를 묻는다. 반면 互惠性이 "正義"가 아니라면 예컨대 소박한 공동체적 경제 법칙인지 아니면 시장 경제의 메커니즘인지 등을 묻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G. Danzig의 서술 전략을 받아들여 논의를 전개하면서 기존 견해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8) *N.E.*, 1132b21 이하.

9) *N.E.*, 1132b30 이하. 강조점은 필자의 것임.

10) 가령 W.D. Ross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또 다른 형태의 正義로 나아간다. … '特殊的 正義'의 제3의 유형 즉 교환(exchange)에 있어서의 正義 또는 상거래의 (commercial) 正義가 존재한다." W.D. Ross, "Introduction", *The Nicomachean Ethics of Aristotle*(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54), p.xiii 참조. 한편 H.J. van Eikema Hommes와 같이 互惠性을 "應報的 (retributive) 正義"로 명명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特殊的 正義를 分配的 正義, 賠償的 (restitutive) 正義, 應報的 正義로 삼분하는 견해도 (명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동소이한 입장이라 할 수 있다. H.J. van Eikema Hommes, *Major Trends in the History of Legal Philosophy*(Amsterdam :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1979), p.23 이하 참조.

11) *N.E.*, 1132b30 이하.

12) *N.E.*, 1132b24.

한다면, 이 두 종류의 特殊的 正義 이외에 제3의 正義 개념을 인정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해 보인다. 우선 比例的 互惠性이 제3의 正義 개념이 될 수 있으려면 당연히 分配的 正義나 是正的 正義와는 '들어맞지 않는' 것이어야 할 텐데 그 점에 있어서라면 算術的 互惠性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역으로 算術的 互惠性과 달리 比例的 互惠性은 分配的 正義 또는 是正的 正義와 '들어맞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를 굳이 제3의 正義 개념이라고 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13] 그렇다면 互惠性은 단순히 分配的 正義나 是正的 正義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일까? 그런데 왜 하필 그것을 "이러한 종류의 正義"라고 했을까? 아니면 互惠性은 아예 正義 개념의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의 문제로서 다뤄지고 있는 것일까?

결국 互惠性에 대한 논의는 互惠性의 본질 자체에 대한 개방적 입장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사실 이 글에서 ἀντιπεπονθὸς를 그냥 互惠性(reciprocity)이라 새기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정 때문이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ἀντιπεπονθὸς를 둘러싼 논의 주제를 "報怨·報恩正義",[14] "膺懲正義"[15] 등으로 규정하기도 하지만 이는 자칫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일 수도 있다.[16]

이하에서는 먼저 互惠性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를 기존의 학설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러한 해석들이 텍스트와의 관계에서 불러일으키는 의문점들을 점검함으로써,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해석에 의할 경우 위에서 제기된 질문들에 대해 어떻게 답할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13) 따라서 互惠性을 이른바 제3의 正義 형태로 보고자 하는 견해는 이러한 논리적 딜레마를 먼저 해소해야 할 것이다.

14) 손병석, 앞의 글, 281면 및 291면 참조.

15) 권창은, 「아리스토텔레스의 正義觀 – 膺懲正義觀을 중심으로 –」, 『서양고전학연구』 제10집 (한국서양고전학회, 1996), 21-2면 참조.

16) 물론 그렇다고 해서 ἀντιπεπονθὸς 자체에 대한 보다 적절한 번역어로서 가령 "되갚음" 등의 용어를 따르지 않는 점에 대한 변명이 되지는 않는다. 필자는 다만 "互惠性"으로 번역하는 것이 나름 여러모로 편리할 뿐만 아니라 어의 전달에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할 뿐이다.

Ⅱ. 호혜성은 정의인가?

G. Danzig는 자신의 논문에서 互惠性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제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관된 질문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互惠性은 正義의 한 형태(a form of justice)인가 아니면 하나의 경제 법칙(a law of economics)에 불과한 것인가? 둘째, 만약 互惠性이 正義의 한 형태라면 그것은 正義의 제3의 형태인가 아니면 分配的 正義나 是正的 正義의 일종인가?[17] 이러한(특히 첫 번째의) 문제 제기는 이 글의 논의를 위해서도 적절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선 첫 번째 질문에 관하여 기존의 학설들이 어떠한 결론과 논거를 제시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자.

1. 호혜성은 정의의 한 형태라는 견해

이 견해는 서술체계상의 위치[18]로 보아 正義에 관한 서술 부분인 <윤리학> 제5권 중에, 그것도 正義論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分配的 正義와 是正的 正義에 관한 논의 바로 다음에 互惠性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견해를 뒷받침하는 텍스트적 근거로는 첫째, 아리스토텔레스가 명시적으로 互惠性을 正義의 한 종류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19] 둘째, 아리

17) Gabriel Danzig, *op. cit.*, p.399 참조. 사실 G. Danzig의 분류 체계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에 따르면 互惠性을 "正義"의 한 형태로 보는 입장을 첫째, 두 가지 特殊的 正義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와 둘째, 제3의 正義 유형으로 보는 견해로 나누게 되지만, 앞의 주 10)에서 보았듯이 互惠性을 '제3의 特殊的 正義'로 보는 견해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견해는 아래에서 살펴보게 되듯이 아리스토텔레스가 特殊的 正義의 유형을 단 두 가지만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해석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배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편 Sarah Broadie와 같이 만일 互惠性을 特殊的 正義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면, 기존의 두 正義 중 어느 하나의 하위 유형으로 보는 것보다는 '제3의 特殊的 正義'로 보는 것이 수월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견해라 할 수 있다. Sarah Broadie & Christopher Rowe, *op. cit.*, p.339 참조.

18) Gabriel Danzig, *op. cit.*, p.399

19) *N.E.*, 1132b30 이하("공동체에서 이러한 종류의 正義는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1134a24 ("앞서 우리는 互惠的인 것이 어떻게 정의로운 것에 관계하는지에 대해 논한 바 있

스토텔레스가 덕은 실천함으로써 습득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덕과 마찬가지로 正義의 덕 역시 타인과의 去來(συναλλάγμα, transaction)에서 우리가 正義를 실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습득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20] 分配的 正義나 是正的 正義를 실천하는 것은 아르콘(ἄρχων)이나 디카스테스(δικαστὴς)[21]의 지위에서나 가능한 것이지[22] 일반 시민(πολίτης)의 지위에서 가능한 것이 아닌 반면, 이후에 언급되고 있는 互惠性이야말로 일반 시민이 타인과의 일상적인 去來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23] 등을 들 수 있다. 그밖에 이 견해는 "그리스인들이 경제 활동의 영역을 정치적인 삶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경제 활동이 인간 행태의 분석을 위한 독자적인 [이론적]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보지도 않았다"[24]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한다.[25]

다.")

20) *N.E.*, 1103b1~1103b15 ("덕은 우리가 먼저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습득하게 된다. …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의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정의롭게 된다. … 우리가 타인과의 去來에서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는 정의롭거나 정의롭지 않게 된다.")

21) 이에 대해서는 박종현, 「고대 아테네 후기 민주정의 司法機關 – 디카스테리아(δικαστήρια)를 중심으로 –」, 『법사학연구』 제30호(한국법사학회, 2004), 259면 이하 참조.

22) Hans Kelsen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分配的 正義는 … 입법자(legislator)에 의해 발휘된다. … 是正的 正義는 심판인(judge)에 의해 발휘된다." H. Kelsen, "Aristotle's Doctrine of Justice", *What Is Justice?*(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7), p.126

23) Gabriel Danzig, *op. cit.*, p.403

24) *Ibid.*, p.402

25) 互惠性이 正義의 한 형태라는 입장을 취하는 학자는 D.G. Ritchie, Gautier & Jolif, W.D. Ross, J. Stewart, J. Burnet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태욱, 앞의 글, 40-57면; 손병석, 앞의 글, 281-2면 및 298-301면; *Ibid.*, pp.402-3 n.18 참조. 다만, 여기서 G. Danzig는 D.G. Ritchie와 Gautier & Jolif의 견해를 互惠性이 正義의 한 형태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시민 사회의 구성 원리로서의 正義'가 분명 特殊的 正義와 같은 수준에서의 正義는 아니지만, 굳이 正義의 한 형태로 보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는 것 같다. 한편, D.G. Ritchie는 互惠性을 특히 "Catallactic Justice"라고 즐겨 부르면서, 이는 이상적인(ideal) 正義라기보다는 초보적인(rudimentary) 正義라고 말한다. D.G. Ritchie, "Aristotle's Subdivisions of 'Particular Justice'", *The Classical Review* 8-5(1894), pp.191-2 참조.

2. 호혜성은 하나의 경제 법칙이라는 견해

이 견해는 서술체계상의 위치보다는 서술되고 있는 내용 자체로 볼 때 互惠性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 부분은 윤리 문제라기보다는 경제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26] 이 견해를 뒷받침하는 텍스트적 근거로는 무엇보다 "互惠性은 分配的 正義와 是正的 正義 그 어느 것에도 들어맞지 않는다."[27]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언급과 아리스토텔레스가 特殊的 正義의 유형을 단 두 가지만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28]을 함께 고려하면 결국 互惠性은 特殊的 正義와는 다른 차원의 논제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서비스 교환의 조건이나 화폐의 가치 척도적·교환 매개적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부분 아리스토텔레스의 작업은 "생활 필요 충족을 위한 공동체적 [경제] 질서"(K. Polanyi, M.I. Finley)[29]에 대한 것이거나, 혹은 더 나아가 "양적으로 다른 상품들 사이의 상대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이론적 기초를 확보하기 위한 형이상학적 시론"(S. Meikle)[30]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엄격히 말해서 正義 개념의 연장선상에 있는 논의를 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31]

3. 소결

생각건대, 互惠性을 단지 하나의 경제 법칙일 뿐이라고 보는 견해의 텍스트

---

26) Gabriel Danzig, *op. cit.*, p.399 및 p.402

27) *N.E.*, 1132b24.

28) *N.E.*, 1131b25 ("分配的 正義 … 그리하여 이것이 正義의 한 종류인 것이다. 남은 한 종류는 是正的 正義이다."). 강조점은 필자의 것임.

29) 정태욱, 「아리스토텔레스의 正義에 관한 小考」, 『서양고전학연구』 제3집(한국서양고전학회, 1989), 45-6면. [ ] 속의 글은 필자가 보충한 것임.

30) Gabriel Danzig, *op. cit.*, p.401

31) 互惠性이 正義의 한 형태라는 주장에 반대하는 학자는 W.F.R. Hardie, H.H. Joachim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태욱, 앞의 글(각주 7), 47-8면; 손병석, 앞의 글, 281-2면 및 298-301면; Gabriel Danzig, *op. cit.*, p.402 n.18 참조.

적 근거인 "互惠性은 分配的 正義와 是正的 正義 그 어느 것에도 들어맞지 않는다."는 부분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피타고라스학파의 互惠性 개념 즉 算術的 互惠性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거부 논리이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적 互惠性 개념 즉 比例的 互惠性도 分配的 正義나 是正的 正義와 들어맞지 않는다고 단정할 근거가 되지는 못 한다.[32] 나아가 그가 명시적으로 比例的 互惠性을 正義의 범주에 포함시켜 언급했다는 점 또한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그 경우 왜 "이러한 종류의 正義"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세 전제와 양립할 수 있는 해명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첫째, 이른바 제3의 正義 형태를 인정하려는 시도는 논리적 딜레마에 빠진다는 점[33] 둘째,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정하는 特殊的 正義의 유형은 分配的 正義와 是正的 正義 단 두 가지 밖에 없다는 점 셋째, 比例的 互惠性이 두 가지 特殊的 正義 중 어느 하나 혹은 둘 다에 대해서 들어맞을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特殊的 正義가 요청되는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分配的 正義는 말 그대로 "分配에 있어서의 正義"[34]라는 의미이지만, 是正的 正義는 "是正하는 구실을 하는 正義"[35]라는 의미이다. 아리스토텔레스

---

32) 이에 반대하는 견해로는 D.G. Ritchie, *op. cit.*, pp.185-6. D.G. Ritchie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말이 互惠性 전반을 겨냥한 것이라 한다. 算術的 互惠性과 比例的 互惠性의 구분은 이 말 다음에야 비로소 나온다는 점이 그 근거라고 한다. 하지만 양자의 구분이 언급되기 이전에도 (1132b21~1132b7)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互惠性은 "피타고라스 학파가 주장하는" 互惠性이고, "라다만튀스(Rhadamanthys)의 正義"라 일컬어지는 互惠性임이 이미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그와 같이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D.G. Ritchie 스스로도 (아리스토텔레스가 算術的 互惠性과 比例的 互惠性의 구분을 언급하기 이전에 말했던) 互惠性이 是正的 正義와 들어맞지 않는다는 대목을 해설하면서 "exact Retaliation"은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는데, 이는 그 시점에 이미 算術的 互惠性만을 전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임을 긍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D.G. Ritchie, *op. cit.*, p.190 참조.

33) 이 글 주) 13 참조. 이 글 주 32)에서 설명한 D.G. Ritchie의 견해도 바로 이러한 논리적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4) *N.E.*, 1130b30 이하 ("特殊的 正義 중에 한 종류는 … 分配에 있어서 행사되는 것이며 …"), 1131a25 ("… 分配에 있어서의 正義는 모종의 가치에 따라야 한다. …"), 1131b10 ("그리하여 A 항을 C 항에 결합시키고 B 항을 D 항에 결합시키는 것이 分配에 있어서의 올바름이고, …")

는 후자를 分配的 正義의 경우와 병렬적으로 재규정하면서 "去來에 있어서의 正義"[36]라 명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두 가지 正義를 모두 "분쟁"과 관련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이다.[37] 다시 말하면 特殊的 正義는 "분쟁"의 우려가 있는 지점에서 비로소 요청되는 것이며,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대표적인 두 "분쟁" 우려 지점을 "分配(διανομή, distribution) 상황"과 "去來(συνάλλαγμα, transaction) 상황"이라 생각한 것이다.[38] 特殊的 正義는 결국 분쟁의 예방이나 그것의 공정한 해결을 지향하는 성품(ἕξις, disposition)[39]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去來(συναλλάγμα) 개념은 사람과 사람이 自發的으로[ἐκούσια συνάλλαγμα] 또는 非自發的으로[ἀκούσια συνάλλαγμα] 엮이게 되는 경우를 포괄하는 것이라는 점과, <윤리학>에서 是正的 正義를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이러한 "두 종류의 去來 유형에 대응하여 是正的 正義도 두 개의 하위 부분(μέρη δύο, two divisions)으로 나뉜다."[40]고 말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是正的 互惠性을 "이러한 종류의 正義"라고 불렀던 이유는 그것이 전반적으로는 特殊的 正義에 들어맞지만, 세부적으로는 구별이 필요한[41] 어떤 하위 범주의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으로

35) *N.E.*, 1131a1 ("다른 하나는 사람과 사람 간의 去來에서 是正하는 구실을 하는 것이다.")

36) *N.E.*, 1131b30~1132a1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去來에 있어서의 正義는 …")

37) 分配的 正義에 관해서는 *N.E.*, 1131a20~1131a24 ("동등한 사람들이 균등하지 않은 몫을 갖거나 받게 될 때, 또는 동등하지 못한 사람들이 균등한 몫을 갖거나 받게 될 때 분쟁과 불평이 발생한다."), 是正的 正義에 관해서는 *N.E.*, 1132a20 ("이런 연유로 사람들은 분쟁이 발생하면 디카스테스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디카스테스에게 가서 묻는 것은 正義에게 가서 묻는 것과 같다.")

38) 필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正義論의 보편성이 바로 이 점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正義의 문제가 다름 아닌 분쟁의 문제이며, 이는 곧 分配와 再分配를 둘러싼 문제'라고 하는 지형도 자체를 완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39) *N.E.*, 1105b20 이하 및 *N.E.*, 1106a10 이하 참조.

40) *N.E.*, 1131a1 이하. G. Danzig는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단순히 是正的 正義는 "두 종류의 去來에 관계한다."고 말하지 않고, "두 개의 하위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물론 이하에서 살펴보겠지만, G. Danzig의 의도는 是正的 正義의 두 하위 부분에 각각 협의의 是正的 正義[非自發的 去來에 대응하는 부분]와 互惠性[自發的 去來에 대응하는 부분]을 대응시키고 이로써 互惠性의 적용 범위를 自發的 去來의 경우에 한정시키려는 것이다. Gabriel Danzig, op. cit., p.404 참조.

해석할 여지가 있다. 예컨대, 예방이나 공정한 해결이 필요한 각종 분쟁들 중 유독 특정한 지점(이는 특정한 유형의 분쟁일 수도 있고, 분쟁의 특정한 국면일 수도 있을 것이다)에만 관련이 있는 성품(ἕξις)으로서 互惠性을 생각하고 있던 것일지 모른다.

Ⅲ. 호혜성은 어떤 정의인가?

위에서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일단 G. Danzig의 두 번째 질문 즉 "만약 互惠性이 正義의 한 형태라면 그것은 正義의 제3의 형태인가 아니면 分配的 正義나 是正的 正義의 일종인가?"[42]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 正義論의 체계적 해석에 따르면 그가 인정하고 있는 두 종류의 特殊的 正義 이외에 제3의 正義 개념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그의 互惠性 개념은 일견 分配的 正義나 是正的 正義의 일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다.[43] 필자의 생각으로는 <윤리학> 텍스트의 정합적인 해석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가장 확실한 전제는 첫째, 互惠性이 正義의 범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과 둘째, 동시에 互惠性은 特殊的 正義의 두 종류 이외의 것으로 이해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그 외에 互惠性이 特殊的 正義의 어느 것과도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은 단지 算術的 互惠性에 국한된 언급이라 할 수 있고, 互惠性이 "한 종류의 正義"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은 그것이 特殊

41) 생각컨대 이것이 바로 "互惠的인 것이 정의로운 것에 관계하는"(*N.E.*, 1131a24) 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2) 이 글의 Ⅱ 부분 참조.

43) 앞에서 분류한 여러 견해들 중에 가령 D.G. Ritchie, Gautier & Jolif, 그리고 정태욱 등의 견해에 따르면 互惠性은 Polis를 전제로 하는 特殊的 正義의 한 형태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Polis의 존립근거가 되는 근본적 규범 원리(로서의 正義)라고 한다. 이에 비해 손병석은 이러한 견해를 일부 수정을 거쳐 받아들임으로써 근본적 규범 원리인 互惠性이 또한 特殊的 正義(특히 是正的 正義)의 일종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D.G. Ritchie 등의 견해보다는 손병석의 견해가 더 타당해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的 正義 외의 제3의 正義 유형이라는 의미는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互惠性이 (두 종류의) 特殊的 正義의 일종이라는 결론은 여전히 잠정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比例的 互惠性이 分配的 正義의 일종인지, 혹은 是正的 正義의 일종이면서 自發的 去來와 非自發的 去來에 모두 관계되는지, 아니면 是正的 正義의 일종이면서 自發的 去來에만 관계되는지[44] 등에 관해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1. 호혜성은 분배적 정의의 일종이라는 견해

현재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J. Stewart 정도만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5] D.G. Ritchie는 이 견해에 대해 전반적으로 텍스트적 근거가 박약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46] 하지만 이 견해를 뒷받침하는 텍스트적 근거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比例的 互惠性에 관한 논의를 正義의 맥락에서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 또한 正義란 그에 의하여 어떤 사람이 선택을 통해 정의로움을 행하게 된다고 일컬어지는 그런 덕이다. 즉 자신과 타인 간에 혹은 두 타인들 간에 무엇을 分配할 경우에, 좋은 것이라면 자신에게는 과다하게 그리고 타인에게는 과소하게, 나쁜 것이라면 자신에게는 과소하게 그리고 타인에게는 과다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比例的으로 균등하게 준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두 타인들 간에 分配를 할 경우에도 그렇다고 한다.[47]

---

44) 반면 互惠性이 是正的 正義의 일종이면서 非自發的 去來에만 관계되는 것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互惠性에 관한 논의(*N.E.*, 1132b21~1134a15)의 거의 전부를 채우고 있는 내용이 바로 서비스 교환이나 화폐를 사용하는 매매와 같은 自發的 去來들이기 때문이다.

45) 정태욱, 앞의 글(각주 7), 47면; 손병석, 앞의 글, 298면; Gabriel Danzig, *op. cit.*, p.404 n.20 참조.

46) D.G. Ritchie, *op. cit.*, pp.188-9 참조.

47) *N.E.*, 1134a1~1134a7 전후. 강조점은 필자의 것임.

만일 互惠性이 是正的 正義의 일종이라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굳이 "去來 상황"이 아니라 "分配 상황"을 예로 들어 正義를 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 밖에 그의 互惠性과 分配的 正義는 일견 모두 "比例的"이라는 공통점[48]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지지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호혜성은 시정적 정의의 일종이라는 견해

대체로 이 견해는 是正的 正義에 대한 서술의 체계와 내용을 검토해보면 결국 互惠性에 관한 논의는 是正的 正義에 관한 논의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물론 互惠性과 是正的 正義의 개념적 상호 관계를 긍정하는 견해들 중에는 역으로 是正的 正義에 관한 논의를 互惠性에 관한 논의의 일부로 봄으로써 사실상 "是正的 正義를 互惠性 속에 흡수시키는"[49] 입장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설령 아리스토텔레스의 正義論을 나름의 방식으로 재구성한 것일 수는 있어도, 아리스토텔레스의 正義論 그 자체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는 없다.[50]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일단 互惠性을 是正的 正義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만으로 검토의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 한편 이 견해는 互惠性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다시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견해로 나뉘게 된다.

우선 G. Danzig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윤리학> 제5권 2장에서 特殊的 正義

48) 互惠性의 比例的 특성에 관해서는 *N.E.*, 1132b30 이하, 分配的 正義의 比例的 특성에 관해서는 *N.E.*, 1131a30 이하 참조. 실로 이 두 개소는 (算術的인) 是正的 正義와 (比例的인) 互惠性을 이른바 交換的 正義(*iustitia commutativa*, commutative justice) 개념으로 통합하고자 했던 St. Thomas Aquinas로서는 반드시 해명을 해야 하는 과제였던 것 같다. 그는 <윤리학>에 대한 자신의 주석집인 *Sententia libri Ethicorum*의 972번 주석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C.I. Litzinger, O.P., *Commentary on the Nicomachean Ethics*(Chicago : Henry Regnery Company, 1964), 972번 주석 참조. St. Thomas Aquinas의 주석의 방법론적 특징이나 역사적 의의 등에 대해서는 손은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주석 -『니코마코스 윤리학 주석』을 중심으로-」, 『서양고전학연구』 제28집(한국서양고전학회, 2007) 참조.

49) 정태욱, 앞의 글, 44면, 주) 7. 정태욱은 St. Thomas Aquinas의 交換的 正義 개념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한다.

50) D.G. Ritchie, *op. cit.*, p.188; 정태욱, 위의 글, 41면 주 71) 참조.

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分配的 正義와 是正的 正義를 구별하고, 후자를 다시 自發的 去來(ἐκούσια συνάλλαγμα)와 非自發的 去來(ἀκούσια συνάλλαγμα)에 대한 두 가지 하위 부분으로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5권 3장에서 分配的 正義를 논한 뒤, 제5권 4장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非自發的 去來에 있어서의 是正的 正義만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제5권 5장의 논의[51]는 自發的 去來에 있어서의 是正的 正義를 논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52] 사실 학설들의 일반적인 평가도 <윤리학> 제5권 4장은 非自發的 유형의 去來에 관한 논의에, 제5권 5장은 自發的 유형의 去來에 관한 논의에 각각 할애되어 있는 점 자체는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53]

하지만 ἀντιπεπονθὸς란 自發的 去來 유형과 非自發的 去來 유형에 모두 적용되는, 혹은 다시 말해서 '去來 개시의 순간에'[54] 호의를 입은 경우와 불의를 당한 경우 모두에 적용되는, "되갚음(ἀντιποιεῖν)에서의 正義"[55]라는 입장에서는 G. Danzig의 구성과는 달리 互惠性을 是正的 正義 전반에 걸쳐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한다. 분쟁으로 번진 모든 유형의 去來들에 있어 불공정한 상태의 종국적인 "是正"이라는 것은 결국 "되갚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互惠性이란 이렇듯 "是正"의 맥락보다는, "되갚음"의 맥락과 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널리 是正的 正義의 일종이면서도 동시에 독특한 개성을 갖는 正義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51) 互惠性에 관한 논의 부분이다.

52) Gabriel Danzig, *op. cit.*, pp.407~8 참조. 여기까지는 J. Burnet의 견해와 기본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J. Burnet은 디카스테스(δικαστὴς)에 의한 "是正"을 당사자들에 의한 "調整"으로 변질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반면, G. Danzig는 넓은 의미의 是正的 正義가 非自發的 去來로 인한 불균형을 좁은 의미의(proper) 是正的 正義로 바로잡는 경우와 일방적인(one-sided, 반대급부의 만족이 없는) 自發的 去來로 인한 불균형을 互惠性이 바로잡는 경우를 포괄하는 것으로 설명할 뿐 개념 변질의 오류를 범하는 것 같지는 않다. J. Burnet의 견해에 대해서는 손병석, 앞의 글, 300면; Gabriel Danzig, *op. cit.*, p.404 n.21 참조.

53) D.G. Ritchie, *op. cit.*, pp.186-7 및 191 참조; 권창은, 앞의 글, 21면 참조.

54) *N.E.*, 1131a5 ("去來들이 自發的으로 개시되기 때문에 '自發的'이라 부른다.") 참조.

55) 권창은, 앞의 글, 21-39면; 손병석, 앞의 글, 291~301면 참조. "되갚음(ἀντιποιεῖν)"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언급으로는 다음의 개소를 참조. *N.E.*, 1132b33~1133a3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되갚고자 하며, … 그들은 선을 선으로 되갚고자 한다. …")

3. 소결

생각건대, 互惠性을 分配的 正義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의 텍스트적 근거라 할 수 있는 "分配 상황"을 예로 든 正義 논의[56]는 논의의 흐름으로 보아 特殊的 正義에 관한 앞서의 모든 논의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논의의 위치가 特殊的 正義에 관한 설명의 말미에 자리하게 되다보니 互惠性에 관한 논의에 뒤이어 오게 된 것이지, 오로지 互惠性에 관한 논의에만 부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는 互惠性에 관한 논의와 "分配 상황"을 예로 든 正義 논의 사이에 特殊的 正義에 관한 결론적 규정[57]이 놓여있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아리스토텔레스는 결국 特殊的 正義도 덕의 하나인 이상[58] "일종의 중용(μεσότης τίς, a kind of mean)"[59]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60]

이밖에 D.G. Ritchie가 지적한 바와 같이 '시장 가격에 따른 分配'[比例的 互惠性]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가치에 따른 分配'[分配的 正義]는 같은 "分配"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라는 점[61]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互惠性은 是正的 正義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 여기서 반드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비록 互惠性을 分配的 正義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견해를 지지해 주지는 않지만, 互惠

---

56) *N.E.*, 1134a1~1134a7 전후.

57) *N.E.*, 1133b29~1134a1 전후.

58) *N.E.*, 1106b24~1106b34 ("…그러므로 덕은 일종의 중용이다. …. 지나침과 부족함은 악덕에 속하는 반면, 중용은 덕에 속한다.") 참조.

59) *N.E.*, 1133b30~1134a1 참조.

60) 아리스토텔레스가 特殊的 正義를 덕의 하나로 정리하는 데 성공적이었는지, 혹은 보다 근본적으로 덕을 중용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그의 시도(H. Kelsen은 이를 "μεσότης doctrine"이라 부르고 있다)가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이에 관해서는 한석환, 「법, 정의, 덕－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서양고전학연구』 제4집(한국서양고전학회, 1990), 171면 이하; H. Kelsen, *op. cit.*, p.117 이하 참조.

61) D.G. Ritchie, *op. cit.*, p.189 참조.

性을 是正的 正義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견해를 논박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학설에 관한 문제이다. 이 학설에 따르면 널리 互惠性과 是正的 正義의 개념적 상호 관계를 긍정하는 견해들의 배후에는 아리스토텔레스 당시의 그리스 세계에서 통용되던 '약정 채권이 (동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독립적'이라는 법리를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약정 채권이 (동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환'된다는 현대 사법의 법리를 투사시키는 몰역사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의 원리에만 관계되는 是正的 正義를 자꾸만 계약체결의 원리에 관계되는 互惠性과 연계시켜 생각하는 오류를 낳았다는 것이다.[62]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시대착오적 편견 때문이 아니라, 텍스트 해석의 결과로부터 互惠性을 ("去來 상황"을 지배하는) 是正的 正義와 연계된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하다. 그리고 이미 언급하였듯이[63] 이 글은 "덕은 실천함으로써 습득되는 것이며, 다른 덕과 마찬가지로 正義의 덕 역시 '타인과의 去來에서' 正義의 덕을 실천함으로써 습득되는 것"이라고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가 유지될 수 있으려면, 아르콘(ἄρχων)이나 디카스테스(δικαστὴς)가 아닌 일반 시민(πολίτης)이 '타인과의 去來에서' 실천할 수 있는 正義의 덕이 존재해야 한다는 해석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互惠性이 바로 그러한 正義의 덕이며, 동시에 그것은 "去來 상황"을 지배하는 是正的 正義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요컨대 互惠性은 是正的 正義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론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첫째, 互惠性이 是正的 正義의 일종이면서 自發的 去來와 非自發的 去來에 모두 관계되는지, 아니면 自發的 去來에만 관계되는지에 관한 검토이며 둘째, 互惠性의 "比例的(analogous)" 특성과 是正的 正義의 "算術的(arithmetical)" 특성[64]이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논증이다. 이하에서는 항을 달

62) 정태욱, 앞의 글(각주 7), 40-6면 및 84-5면; 정태욱, 앞의 글(각주 29), 42-3면 참조.
63) 이 글 Ⅱ 부분 참조.
64) 혹은 달리 표현한다면, 互惠性의 "幾何學的 比例"의 특성과 是正的 正義의 "算術的 比例"의

리하여 이 두 문제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Ⅳ. 호혜성의 의미

1. 호혜성은 비자발적 거래에도 관계하는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分配的 正義는 "分配 상황"을 지배하는 덕이고, 是正的 正義는 "去來 상황"을 지배하는 덕이다. 다만 전자의 경우는 分配받는 사람들 상호간의 관계가 활성화되지는 않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去來 당사자들의 관계가 활성화된다. 또한 전자의 경우는 반드시 처음부터 아르콘(ἄρχων)과 같은 공직자가 개입하게 되지만, 후자의 경우는 분쟁으로 번진 경우에만 디카스테스(δικαστής)가 개입하게 된다. 그렇다면 分配的 正義에서는 '올바른 分配'의 기준에 관한 언급이, 是正的 正義에서는 '올바른 去來'의 기준에 관한 언급이 필수적이다(한편 '올바른 是正'의 기준은 후자로부터 거의 자동적으로 확보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去來가 非自發的 去來와 自發的 去來로 구분된다는 점에 있다. 非自發的 去來의 경우, 去來 상황을 지배하는 덕은 발생한 '去來에 대한 사후적 처리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自發的 去來의 경우, 去來 상황을 지배하는 덕은 종국적으로는 분쟁으로 번진 去來에 대한 사후적 처리의 기준이 되겠지만(이 경우는 사실상 非自發的 去來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다.[65]), 일차적으로는 '去來의 수행 기준'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互惠性이 "自發的 去來"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특수한 사정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이렇게 본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互惠性을 논하는 부분[66]에서 왜 서비스 교환의 조건이나 가치 척도로서의 화폐에 대한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65) *N.E.*, 1136b5 이하 ("정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취급당하는 것은 自發的인 것이 아니다.") 참조.

논의를 장황하게 펴고 있는지도 설명이 된다. 서비스 교환과 같은 自發的 去來의 수행 과정에서 적정한 "되갚음" 즉 반대급부의 이행이란 자연히 이종의 서비스 간의 등가 계산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67]

다른 한편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互惠性과 是正的 正義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의 예로 든 것이 非自發的 去來의 경우인 "공직자 폭행 사례"[68]였다는 점에서 일견 互惠性이 "非自發的 去來"의 경우에도 논의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불일치 상황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지하고 있는 것은 互惠性이 아니라 是正的 正義일 뿐이며,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이 수용하고자 하는 正義로서의 互惠性에 대해서는 그것이 "自發的 去來"인 서비스 교환에 있어서 공동체의 결속 원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을 뿐인 것 같다.[69] 나아가 이 경우 互惠性은 算術的인 방식이 아니라 比例的인 방식으로 去來의 조건이 결정되는 '시장적 메커니즘'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非自發的 去來의 경우를 위한 互惠性이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是正的 正義도 [非自發的 去來에 대응하는 부분과 自發的 去來에 대응하는 부분이라는] 두 개의 하위 부분으로 나뉜다."[70]고 한 언급과도 자연스레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 소위 넓은 의미의 是正的 正義가 非自發的 去來에 대응하는 좁은 의미의 是正的 正義[제5권 4장에서 논의]와 自發的 去來에 대응하는 互惠性[제5권 5장에서 논의]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로 互惠性은 非自發的 去來의 규율과는 무관한 것일까? 보통의 경우 범죄의 형태로 개시될 非自發的 去來에 있어서는, 일방 당사자인 가해자가 범죄를 수행하는 데 지침이 되는 기준이 있을 리 없고, 타방 당사자인 피해

66) <윤리학> 제5권 5장에 해당하는 *N.E.*, 1132b21~1134a15.
67) Gabriel Danzig, *op. cit.*, p.410 참조.
68) *N.E.*, 1132b25~1132b30.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69) *N.E.*, 1132b30 이하 ("서비스 교환이 필요한 공동체에서 이러한 종류의 正義는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강조점은 필자의 것임.
70) *N.E.*, 1131a1 이하. [ ] 속의 글은 필자가 보충한 것임.

자가 침해를 당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준이 있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복수하려는(ἀνταποδίδωμι, revenge) 상황을 생각한다면 꼭 그렇게 말할 수만은 없지 않을까? 이 문제에 관해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다음과 같은 언급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모욕을 당하고도 참거나 친구가 모욕당하는 데도 참는 것은 노예적인 일이다. … 복수하는 것이 더 인간적인 반응이다.[71]

> 누군가가 법을 어긴 채로(그렇지 않다면 복수가 될 것이므로) 自發的으로 타인에게 해악을 가한다면, 그는 정의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 자신이 당했기 때문에 당한 대로 되갚는 사람은 정의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이라 여겨지지 않는다.[72]

비록 가해자가 원천적으로(즉, '도발'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침해를 개시하는 데 있어서는 지침이 되는 어떤 '去來의 수행 기준'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피해자 즉, 불의를 당하여 되갚음(ἀντιποιεῖν)을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지켜야 할 일정한 '去來의 수행 기준'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그의 "되갚음" 행위가 정당하고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는 "복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이 "원천적으로 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되갚음을 시도하는 것이어야 하고[73] 둘째, "당한 대로" 되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비록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이 소위 '정당방위'와 같은 경우를 고려하고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러한 경우를 생각해 볼 때도 사정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다. 즉 피해자는 '터무니없이 과도한 반격'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방어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71) *N.E.*, 1126a5~1126a30
72) *N.E.*, 1138a5~1138a24
73) 따라서 소위 도발된 침해의 경우여서는 안 된다.

요컨대 非自發的 去來가 침해 행위와 이를 되갚는 행위가 교환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非自發的 去來에 대한 '사후적 처리의 기준'만이 아니라 (非自發的) '去來의 수행 기준' 그 자체도 필요하다. 더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복수를 하려는 것이 인지상정인 만큼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非自發的 去來를 단순히 예외적인 현상으로 간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당한 대로" 되갚는 것이며, 혹은 '과도하지 않게' 방어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算術的" 互惠性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同害 報復'의 기준을 채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실적으로도 그렇다. 만일 누군가가 타인의 자식을 살해했는데,[74] 죽은 자식의 아버지가 복수[75]하려고 보니 살인자에게는 자식이 없었다고 한다면 엄격히 말해 "算術的" 互惠性에 근거한 '同害 報復'이란 처음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추측컨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른바 "比例的" 互惠性을 지지하고 있는 까닭도 "算術的" 互惠性의 현실적 한계를 직시했기 때문일 수 있다. 결국 "당한 대로" 되갚는 것은 "比例에 따라" 되갚는 것이며, '과도하지 않게' 방어하는 것은 '比例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어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比例的 互惠性 개념을 소개한 후에도 왜 "악을 악으로 갚는"[76]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가 명백해진다. 만일 比例的 互惠性 개념이 오로지 自發的 去來에만 관계된다면 "선을 선으로 갚는"[77] 것에 대해서만 말하면 될 뿐, 이러한 말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는 전형적으로 非自發的 去來 즉 침해와 복수를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74) 이 사례는 *Sententia libri Ethicorum*의 930번 주석에서 폭력에 의한 非自發的 去來(N.E., 1131a~1131a8)의 예로 언급된 사례이다. C.I. Litzinger, O.P., *op. cit.*, 930번 주석 참조.

75) 여기서 말하는 복수란 아버지가 그 자식을 대신하여 복수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 자신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 손수 복수한다는 뜻임을 주의해야 한다.

76) *N.E.*, 1132b33~1133a3.

77) *N.E.*, 1132b33~1133a3.

렇게 볼 경우에 이제까지 논의한 正義가 동시에 "政治的 正義(πολιτικὸν δίκαιον, political justice)"[78]이기도 하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과도 잘 맞아떨어지게 된다. 이 말은 결국 正義가 자유로운 시민들(πολῖται)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전제로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적인 "공동체의 결속"이 아니라 "자유로운 결속"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선을 선으로 갚는" 일이 없으면 교환 공동체 자체가 생길 수 없다는 점[79]에서 自發的 去來에서의 比例的 互惠性이 政治的 正義 속에서 의의를 갖는 만큼,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이 불가능하다면 노예와 같은 삶이 될 것이라는 점[80]에서 非自發的 去來에서의 比例的 互惠性도 政治的 正義 속에서 의의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比例的 互惠性은 G. Danzig의 견해와 달리 自發的 去來뿐만 아니라 非自發的 去來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두 종류의 去來 유형에 대응하여 是正的 正義도 두 개의 하위 부분으로 나뉜다."는 말은 '去來에 대한 사후적 처리의 기준'인 좁은 의미의 是正的 正義[제5권 4장에서 논의]와 '去來의 수행 기준' 그 자체인 互惠性[제5권 5장에서 논의]이, 즉 다시 말해 넓은 의미의 是正的 正義가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서' 自發的 去來와 非自發的 去來에 관계한다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면 족할 듯하다.

2. 호혜성의 비례적 성질: "공직자 폭행 사례"를 중심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피타고라스학파의 互惠性 개념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를 是正的 正義와 잘못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사례를 들어 양자가 같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78) 보다 정확한 의미로는 정태욱이 번역한 바와 같이 "Polis 사회의 正義"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정태욱, 앞의 글, 28~31면, 주 29) 참조.

79) *N.E.*, 1133a2

80) *N.E.*, 1133a1

> 만일 공직자가 일반인을 폭행했다고 하여 그 사람이 공직자를 폭행으로 되갚는 것은 잘못이며, 만일 일반인이 공직자를 폭행했다면 공직자가 그 사람을 폭행으로 되갚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그 사람은 처벌도 받아야만 한다.[81]

사례를 통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是正的 正義가 반영 가능한 공직자와 사인의 차등 취급을 피타고라스학파의 互惠性 개념이 반영하지 못함을 보이려 하고 있다. 그런데 是正的 正義에 의할 경우 공직자와 사인을 比例的으로 차등 취급한다고 하면 이는 곧 是正的 正義가 算術的 平等을 지향한다는 점[82]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 사례는 다시 아리스토텔레스가 긍정하는 互惠性이란 바로 이러한 "比例的 차등 취급에서의 互惠性"이라는 언급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적 互惠性의 "比例的" 특성과 是正的 正義의 "算術的" 지향점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과도 같다. 이에 대하여 일부 견해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안하고 있다.

---

81) *N.E.*, 1132b25~1132b30 전후. 이 사례 외에도 아리스토텔레스는 행위가 自發的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이 부분의 해석도 사실 매우 논쟁적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공직자 폭행 사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학파의 互惠性 개념으로는 自發性에서의 차이를 반영시킬 수 없으나 是正的 正義로는 가능하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반면 Sarah Broadie처럼 '是正的 正義를 논하는 부분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自發性에서의 차이를 언급하는 점으로 보아, 是正的 正義에서는 自發性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데 중점이 있지만, 互惠性은 형벌을 가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되므로 自發性에서의 차이를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다. Sarah Broadie & Christopher Rowe, *op. cit.*, p.343 참조. 이러한 해석상의 차이는 이 개소에서 "自發性"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이해의 차이와도 관련이 있다. H. Rackham에 따르면 여기서 "행위가 自發的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라는 말은 "행위가 행위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행해진 것인지 여부"를 의미한다. 이와 달리 St. Thomas Aquinas나 권창은은 이를 쉽게 말해 '행위자가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되었던 것인지 또는 그가 모르고 저지른 행위인지 여부'로 이해하고 있다. C.I. Litzinger, O.P., *op. cit.*, 970번 주석 참조; 권창은, 앞의 글, 28면 이하 참조. 이상과 같은 해석상의 논란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고찰하기로 한다.

82) *N.E.*, 1132a2~1132a5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기망했는지 혹은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기망했는지 여부나 간통을 저지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여부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법은 당사자를 동등하게 취급하면서 오로지 손해의 본질만을 볼 뿐이다.")

이미 오래전에 D.G. Ritchie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是正的 正義]는 [互惠性]의 틀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D.G. Ritchie에 따르면 比例平等이 아니라 算術平等으로 규정되는 [是正的 正義]는 "비례하는 되갚음"으로서의 [互惠性]과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是正的 正義]는 부당한 손해와 부당이득 사이의 중용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서 이러한 이득을 떼어내어 피해자의 손해를 메꾸어 줌으로써 실현되며 이러한 과정은 손해와 이득의 정량화를 그 전제로 한다. 일단 정량화되면 가해자나 피해자의 사회적 신분은 문제될 것이 없으며 정량화된 손해와 이득 사이의 중용인 산술평등을 회복하면 [是正的 正義]는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손해와 이득의 정량화 혹은 산출과정에서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가해자의 책임정도 등의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게 되며 이렇게 고려하는 것은 이러한 요소들에 비례하는 손해를 산출하기 위해서이다. 달리 말해서 손해와 이득의 정량화의 원리는 [比例的 互惠性]이며 정량화된 손해와 이득 사이의 중용을 실현하는 것은 산술평등으로서의 [是正的 正義]이기 때문에 두 正義가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83]

그러나 과연 이러한 제안에 따라 손해액의 산정 과정과 손해 배상의 절차를 구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원천적인 分配 상황이 아니라 去來를 통한 再分配 상황에서조차 손해액이야 어떤 식으로 산정되든,[84] 산정되어 나온 금액의 배상은 엄격히 준수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算術的 平等을 표방하는 是正的 正義의 모습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침해된 법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로 인한 불균형을 是正한다고 하는 것은 전체로서 是正的 正義 본연의 임무이다. 이 점을 무시하고 침해된 법익을 이른바 "比例的으로" 산정하는 과정과 그렇게 해서 산정된 결과를 단지 "算術的으로" 반영시켜 처리하는 과정

83) 권창은, 앞의 글, 37~8면 주81). 가독의 편의상 일부 내용 이해와 무관한 사항은 생략하였으며, "是正正義"를 "是正的 正義"로, "(比例)膺懲正義"는 "(比例的) 互惠性"으로 고치고 [ ]로 표시하였다.

84) "比例的"이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分配的 正義에 관한 언급에서 보이듯이 어떤 정치적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른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N.E.*, 1131a24~1131a30 참조.

으로 분할한다는 것은 결국 是正的 正義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다른 견해는 아리스토텔레스적 互惠性이 比例的 성질을 갖는 점에 대하여 "이러한 그의 견해 속에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상이한 報怨이 행해져야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 나름의 시대적·계급적 편견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85]이라고 함으로써 문제를 비껴가려 한다. 그러나 과연 이 사례가, 그리고 比例的 互惠性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편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공직자 폭행 사례"에서 是正되어야 할 "불균등",[86] 혹은 법이 보고자 하는 "손해의 본질",[87] 혹은 더 간단하게 '침해된 법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먼저 주목해야 한다.[88] 예컨대 공무 수행 중인 공직자를 사인이 폭행했다면 자연인에 대한 "폭행"[89]과 공무 수행 기관에 대한 '공무 방해'나 '권위 실추' 또는 공동체에 대한 '질서 교란' 등이 경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는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합리성이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실정법상으로도 통용되는 이해였던 것 같다(D.M. MacDowell).[90] 그렇다면 이를 하나의 "편견"으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요컨대 "공직자 폭행 사례"에서 침해되고 있는 법익의 상대적 차이에 주목

85) 손병석, 앞의 글, 293면.

86) *N.E.*, 1132a5 이하 ("그러므로 이러한 종류의 부정의는 하나의 불균등이기 때문에 판사는 이를 균등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87) *N.E.*, 1132a4~1132a5 ("법은 당사자를 동등하게 취급하면서 오로지 손해의 본질만을 볼 뿐이다.")

88) G. Danzig는 "是正的 正義에서 고려치 않는 것은 당사자의 인격(moral character)에 있어서의 차이이지, 당사자의 법적인 신분(legal status)에 있어서의 차이가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정합적 해석을 꾀하고 있다. Gabriel Danzig, *op. cit.*, p.408 n.28. 하지만 이 말도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법적인 신분 그 자체가 아니라 침해되는 법익이기 때문이다. 또한 G. Danzig와 달리 是正的 正義에서는 당사자의 공적-법적 신분(public-legal status)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견해로는 H.J. van Eikema Hommes, *op. cit.*, p.25 참조.

89) *N.E.*, 1131a5 이하 ("다른 것들은 폭력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폭행, 감금, 살해, 폭력에 의한 강도, 상해, 학대, 모욕 등이다.").

90) 권창은, 앞의 글, 26면 주 59) 참조.

한다면, 是正的 正義가 침해되는 법익의 크기에 맞게 "算術的으로" 적용되고 있을 뿐, 당사자의 가치에 따라서 "比例的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91] 물론 是正的 正義가 반영하고 있는 이러한 비대칭적 결과를, 算術的 互惠性 개념이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적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한 방향의 폭행으로 침해되는 법익과 그 반대 방향의 폭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크기나 종류가 다르다면 이른바 "라다만튀스(Rhadamanthys)의 正義"[92]에 따르더라도 두 경우의 처리 결과는 당연히 일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공직자 폭행 사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의도와 달리 "같은 것은 같게"라는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사례가 아니라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원리가 적용되어 마땅한 사례인 것이다.[93]

V. 나가며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이 글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互惠性(ἀντιπεπονθὸς) 개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 글의 본문에서 시도하고 있는 분석은 우선 어떤 역사의식의 결여나 시대착오적 편견에 영향 받지 않고, 텍스트 자체의 엄밀한 해석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는 互惠性 개념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밝혀내기

---

91) 사실 이러한 이해는 이미 St. Thomas Aquinas가 *Summa Theologica*와 *Sententia libri Ethicorum*에서 제시했던 바로 그것이다. 즉 "공직자 폭행 사례"에서의 비대칭성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침해와 되갚음 사이의 物的 平等[equality between action and passion]이지, 사람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의미의 人的 比例[proportion between things and persons]가 아니라는 것이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Fathers of the English Dominican Province, *The Summa Theologica of St. Thomas Aquinas*(New York : Benziger Bros., 1947), Ⅱ-Ⅱ, q.61, a.2 및 q.61, a.4; C.I. Litzinger, O.P., *op. cit.*, 969번 주석 참조. 참고로 두 영문 번역서는 St. Thomas Aquinas의 기타 저작들과 함께 다음의 인터넷 주소에서 구해 볼 수 있다 : http://www.josephkenny.joyeurs.com/CDtexts/

92) *N.E.*, 1132b25 이하 참조.

93) 라다만튀스의 正義를 비판하려고 한다면, 하나의 사건을 놓고서 是正的 正義에 반하는 처리가 있음을 지적해야지,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질적으로 다른 두 개의 사건을 겹쳐 놓고서 왜 양자의 경우 처리가 일치하지 않는지를 묻는 것은 넌센스이다.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正義論에 대한 나름의 재구성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正義論 그 자체에서 읽어낼 수 있는 互惠性 개념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전히 분석이 미진한 부분이 있고 보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도 많지만, 현 시점에서 잠정적으로나마 도출 가능한 결론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아리스토텔레스의 比例的 互惠性 개념은 단지 하나의 경제 법칙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正義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나아가 Polis의 존립근거가 되는 근본적 규범 원리로서의 제3의 正義 유형 혹은 特殊的 正義의 제3의 유형을 구성하고 있다기보다는 기존의 두 가지 特殊的 正義의 틀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두 가지 特殊的 正義 중에서도 分配的 正義보다는 是正的 正義의 특별한 한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리스토텔레스의 互惠性 개념이 "算術的" 平等을 지향하는 是正的 正義의 한 형태라는 점은 互惠性 개념의 "比例的" 특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적 부정합성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나아가 互惠性 개념이 是正的 正義의 "특별한" 한 형태라는 점은, 가령 自發的 去來로부터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디카스테스(δικαστὴς)가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데 지침이 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는 "보통의" 是正的 正義인 것이 아니라, 自發的 去來의 수행 기준 그 자체 즉, 去來 당사자들이 去來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장적 메커니즘'에 따라 比例的인 방식으로 去來의 조건을 결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지침이 되는 독특한 기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셋째, 自發的 去來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非自發的 去來의 경우에도 互惠性 개념이 적용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누군가 타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그 타인은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非自發的 去來에 있어서는, 일견 가해자가 범죄를 수행하는 데 지침이 되는 기준 따위가 있을 리도 없고,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침해를 당하는 데 지침이 되는 기준 따위도 있을 리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복수하려는(ἀνταποδίδωμι) 상황이거나, 정당방위를 시도하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적어도 피해자는 "比例에 따라" 되갚아야 하며, '比例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어를 시도해야 한다는 去來 수행 지침의 규율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去來의 경우에 아리스토텔레스적 互惠性의 "比例的" 특성은 교환하고자 하는 서비스 간의 比例的 가치 대응(自發的 去來)이나, 교환되게 될 침해와 복수 내지 방어 간의 比例的 가치 대응(非自發的 去來)을 통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Nicomachean Ethics*

Broadie, Sarah, & Christopher Rowe, *Aristotle : Nicomachean Ethics*,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Bywater, J., *Aristotle's Ethica Nicomachea*, Oxford : Clarendon Press. 1894.
http://www.perseus.tufts.edu/hopper/

Rackham, H., *The Nicomachean Ethics : with an English Translation*,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34.
http://www.perseus.tufts.edu/hopper/

Ross, W.D., *Ethica Nicomachea in The Works of Aristotle Translated into English* Vol. 9,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25.
http://classics.mit.edu/index.html

최명관,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광사, 1986.

2. 논문 및 저서

Aquinas, Thomas, *Summa Theologica*, trans. by Fathers of the English Dominican Province, *The Summa Theologica of St. Thomas Aquinas*, New York : Benziger Bros., 1947.

http://www.josephkenny.joyeurs.com/CDtexts/

Aquinas, Thomas, *Sententia libri Ethicorum*, trans. by Litzinger, C.I., O.P., *Commentary on the Nicomachean Ethics*, Chicago : Henry Regnery Company, 1964.
http://www.josephkenny.joyeurs.com/CDtexts/

Danzig, Gabriel, "The Political Character of Aristotelian Reciprocity", *Classical Philosophy* 95-4, 2000.

Eikema Hommes, H.J. van., *Major Trends in the History of Legal Philosophy*, Amsterdam :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1979.

Ritchie, D.G., "Aristotle's Subdivisions of 'Particular Justice'", *The Classical Review* 8-5, 1894.

Ross, W.D., "Introduction", *The Nicomachean Ethics of Aristotle*,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54.

권창은, 「아리스토텔레스의 正義觀－膺懲正義觀을 중심으로－」, 『서양고전학연구』 제10집, 한국서양고전학회, 1996.

박종현, 「고대 아테네 후기 민주정의 司法機關－디카스테리아(δικαστήρια)를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제30호, 한국법사학회, 2004.

손병석,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報怨·報恩正義(to antipeponthos dikaion)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제15권,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1991.

손은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주석－『니코마코스 윤리학 주석』을 중심으로－」, 『서양고전학연구』 제28집, 한국서양고전학회, 2007.

정태욱, 「Aristoteles의 正義論에 관한 考察」,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9.

_____, 「아리스토텔레스의 正義에 관한 小考」, 『서양고전학연구』 제3집, 한국서양고전학회, 1989.

한석환, 「법, 정의, 덕－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서양고전학연구』 제4집, 한국서양고전학회, 1990.

<Abstract>

On Aristotelian Reciprocity

Park, Joon-Seok*

Aristotelian reciprocity is not a law of economics, but a form of justice. It is not a third form of justice, i.e. neither a third form of justice other than particular justice, nor a third form of particular justice, but a form of rectificatory justice.

Aristotelian reciprocity the basis of which is an analogous proportion does not conflict, despite its analogous character, with rectificatory justice which operates following an arithmetical proportion. It is a special kind of rectificatory justice. It is special in the sense that it does not work ex post facto as rectificatory justice properly understood does, but works simultaneously with transactions. Voluntary transactions between parties are governed at their generation stage by reciprocity through the market mechanism.

Reciprocity also governs involuntary transactions between wrongdoers and their victims. It is totally absurd, of course, to say that there is a just way to be respected either in wrongdoer's inflicting harm or in victim's suffering it. Another story, however, can be told when the victim tries to revenge or self-defense. For we are legitimate in saying that the victim, as Aristotle himself said or seems to have said, ought to be bound by the just proportion both in vengeance and self-defense.

In both kind of transactions. analogous character of Aristotelian reciprocity, of course, obtains.

---

* Assistant Professor in Law, Chonbuk National University (bookofchange@daum.net)

[Key Words]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justice, reciprocity, distributive justice, rectificatory justice, voluntary transaction, involuntary transaction

접수일 : 2010. 3.31, 심사일 : 2010. 4. 5~4.12, 게재확정일 : 2010. 4.20